

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seoul.go.kr

제3651호

2021.2.22.(월)



목 차

◆ 자치법규

[입법예고]

제2021-487호	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·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	2
------------	---	---

◆ 구 고 시

제2021-32호	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(안)(용산구)	4
-----------	---	---

자치법규**[입법예고]**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-487호

**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·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
입법예고**

「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·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1년 2월 22일
서울특별시장

1. 제정이유

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「자치경찰사무와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치경찰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령의 기준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를 규정함(안 제2조, 별표 1).
- 나. 서울특별시의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‘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’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위원 추천·임명방법 및 운영관련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).
- 다. 국가경찰과의 상호 협력을 위하여 서울경찰청 등과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함(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).
- 라.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정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5조).
- 마.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편성 등 기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사항을 규정함(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).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(참조: 조직담당관,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)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,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(전화: 02-2133-6744, FAX: 02-2133-0822,

E-mail: zerion@seoul.go.kr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※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(<http://legal.seoul.go.kr>)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
구 고 시

◆ 용산구고시 제2021-32호

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(안)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39호(2020.1.23.)로 도시관리계획(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된 용산구 한강로3가 65-584번지 일원 (주)부영주택이 시행하는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주택건설사업과 관련 「주택법」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이에 대해 고시합니다.

2021년 2월 22일

용 산 구 청 장

1. 사 업 명: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주택건설사업

2. 사업주체

가. 사업주체: (주)부영주택

나. 주 소: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 부영빌딩

3. 사업개요

가. 사업위치: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65-584번지 외 10필지

나. 사업기간: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40개월

다. 시행면적: 51,915㎡(대지면적 46,524㎡, 기반시설 도로 5,391㎡)

라. 건설주택규모 등

사업종류	구 분	사 업 내 용	비고
주택건설	대지면적	46,524.00㎡	-
	건축면적(건폐율)	10,603.514㎡(22.79%)	
	연 면 적(용적률)	243,445.03㎡(336.00%)	
	주 용 도	공동주택(969세대) 및 부대복리시설	
	주동수 및 층수	13개동 지하3층/지상11~32층	
	사 업 비	2,121,385,011천원	

4. 「주택법」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
 가. 「건축법」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
 나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
 다. 「하수도법」 제34조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

5. 공공시설 부담에 관한 계획 변경

구분	기존	변경	비고
공공 시설	· 계획: 34.91% - 도로 조성: 5,391㎡ - 공공청사 설치: 연면적: 41,829.99㎡ → 환산부지면적: 12,734.12㎡ - 전체: 5,391㎡ + 12,734.12㎡ = 18,125.12㎡	· 계획: 34.55% - 도로 조성: 5,391㎡ - 공공청사 설치: 연면적: 42,515.44㎡ → 환산부지면적: 12,547.95㎡ - 전체: 5,391㎡ + 12,547.95㎡ = 17,938.95㎡	

6. 관계도면: 세부 관계도면은 열람 장소(용산구 주택과)에 비치된 도면 참조

- 안전한 서울 • 따뜻한 서울
- 꿈꾸는 서울 • 숨쉬는 서울



기관의 장	
선	
람	

공 람									